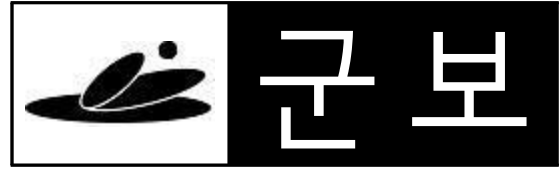


예산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람	

제647호 2022. 1. 14.(금)

공 고

- 예산군 공고 제2022-62호 : 2022년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시공업체 모집 공고 1
- 예산군 공고 제2022-82호 : 군계획시설(문화시설) 사업 실시 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5

입법예고

- 예산군 고시 제2022-94호 :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6
- 예산군 고시 제2024-96호 :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1

회									
람									

발행 예산군 (편집 기획담당관 ☎ 339-7144)

공고 제2022 -62 호

2022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공업체 모집 공고

I. 사업 개요

1. 사업명 : 2022년 과수 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2. 주관기관 : 예산군, 당진시
3. 시행주체 : 예산농금농업협동조합
4. 사업지역 : 예산군(예산지역), 당진시(당진지역)
5. 사업목적
 - 고품질·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 기반구축 지원을 통한 경쟁력제고

II. 세부 추진 계획

1. 대상사업

- 사업내용 : 품종갱신사업(저수고 밀식형), 관수관비시설(수동스프링클러), 관정개발(6인치 일반형), 방풍망시설(산간지형), 서리우박피해 방지시설(미세살수장치, 방상펜), 야생동물방지시설(산간지형 방조망), 작업로 정비, 지주시설(개별식, 울타리식)
 - ※ 사업비 및 사업량은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계약시 ~ 2022년 12월 30일
- 사업자 선정방식 : 시공업체 공모
 - ※『FTA기금 과수생산시설 표준규격·설계·시방 자료집』참조 : 예산군 농정유통과 및 예산농금농협 문의

2. 시행업체 선정 방식

- 선정방식 : 사업추진 군과 사업시행주체는 시공업체를 검토한 후 과수발전협의회에서 업체선정 및 승인여부 결정
-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과수발전협의회 위원회』구성 (외부전문가, 관련지자체, 농협, 농가대표 등)

3. 참가자격

- 사업자 등록증 소지 업체
- 시공업 등록증(관정에 한함) 소지 업체
- 농수산사업통합정보시스템에 부정시공업체로 등록되지 아니한 업체

4. 공고 및 일정

가. 공 고

- 공고기간 : 2022. 1. 10.(월) ~ 2021. 1. 19.(수)
- 공고방법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예산군, 당진시, 예산능금농협)

■ 인터넷 홈페이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군(http://www.yesan.go.kr) ○ 당진시(http://www.dangjin.go.kr) ○ 예산능금농협(http://www.appleyesan.com)

- 접수마감일 : **2022. 1. 19.(수) 17시까지**
- 접 수 처 : 예산능금농협 지도과, 예산능금농협 당진지점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나. 시공사업자 선정 및 공고일(예정)

- 일 자 : 2022. 2월중(과수산업발전협의회 개최 후)
- 공고방법 : 예산군, 당진시 및 예산능금농협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 선정 및 공고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5. 신청서 제출 방법

가.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FTA기금 과실생산·유통지원사업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 (신청양식, 세부사업별 최소사양)

나. 제출자료(2부씩)

- 참여신청서, 견적서, 설계도, 시방서(자료순서 준수, 저장매체(USB) 1개 추가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 법인등기부등본, 시공업체등록증 사본(관정), 2년간('18. '19.) 사업실적 증빙자료,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직원현황 증빙자료

다. 유의사항

- **시공업체 제안단가는 공시단가를 초과할 수 없음**
- **선정후 부당시공업체로 지정(통보)될 경우 선정취소되어 사업시행할 수 없음**

6. 공사계약 체결 : 선정 시공업체 중 농가가 자율적으로 선택 계약

7.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시·군 및 예산능금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산군 : 농정유통과 과수특작팀(041-339-7582)
- 당진시 : 농업정책과 원예산업팀(041-350-4143)
- 예산능금농협 : 본소 지도과(041-332-3506~9), 당진지점(041-354-0172~3)

2022년 1월 일
예 산 군 · 당 진 시
예산능금농업협동조합

2022년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참여 신청서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장주소			전 화 번 호	☎ :	핸드폰 :
회사설립일			자 본 금	백만원	
직 원 현 황	명		등록 . 자격 증명 및 번호		
사업실적	'20년	백만원 /	'21년	백만원 /	합계
백만원					

<참여공사명> ※ 모든 시공사업에 ○표 하세요

관수관비시설 / 1-1 수동스프링쿨러(1주당 사과 20L/h 1개,배 2개)	
관정개발 / 2.2 6인치(일반형)	
방풍망 시설 / 5-2 산간지형(각관), 산간지형(개폐식)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 9-1 미세살수장치	
서리우박피해방지시설 / 9-2 방상팬(3.3kw,6~8대/ha)	
야생동물 방지시설 / 11-1 방조망(산간지형,개폐식)	
작업로정비(과수원내)	
지주시설/13-1 개별식. 13-4 울타리식	
품종갱신 / 15-6 키낮은사과원(밀식)	
합 계	()개 사업

위와 같이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시공업체 참여를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견적서, 2. 설계도, 3. 지방서

22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예산군수·당진시장·예산농금농업협동조합 귀하

- ※ 가. 첨부서류는 사업별 해당자료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최소사양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평가상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희망업체에 있습니다.
 다. 신청서상 기재사항을 증명할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2022년 과수고품질시설현대화사업 세부사업별 단가

예산.당진

세부사업별	2020년도 사업단가	2021년도 사업단가	비 고
1. 관수관비시설			
1.1 수동 스프링클러	7,500천원/ha	7,500천원/ha	
2. 관정개발			
2.3 6인치(일반형)	8,000천원/공	8,000천원/공	
5. 방풍망시설			
5.2 산간지형(각관시공) 산간지형(개폐식)	30,000천원/ha 36,000천원/ha	30,000천원/ha 36,000천원/ha	
9. 서리우박피해방지			
9.1 미세살수장치	-	9,400천원/ha	
9.2 방상펜	24,000천원/ha	24,000천원/ha	
11. 야생동물 방지시설			
11.1 방조망(산간지형, 개폐형)	30,000천원/ha	30,000천원/ha	
13. 지주시설			
13.1 개별식	8,000천원/0.5ha	8,000천원/0.5ha	
13.4 울타리식	7,500천원/0.5ha	7,500천원/0.5ha	
15. 품종갱신			
15.6 키낮은사과원(밀식)	62,000천원/1ha	62,000천원/1ha	
15.6 묘목갱신(밀식)	18,000천원/1ha	18,000천원/1ha	

예산군 공고 제2022-82호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에 따른 열람공고

-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일원에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의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공고 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열람 후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열람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7.

예산군수

가. 사업의 종류 : 군계획시설(문화시설)사업

나. 사업개요

도시명	사업명	위치	사업의 종류	사업량	비고
예산읍	복합문화 복지센터 광장 정비공사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298번지	군계획시설 (문화시설)	주차장 조성 955.6㎡ 다목적 광장 1445.1㎡ 휴게쉼터 조성 1,133.8㎡ 어르신 놀이터 1,862㎡	

다. 사업시행자 주소 성명

- 주소 : 충청남도 예산군 군청로 22
- 성명 : 예산군수

라. 사업기간 : 인가일로부터 2022.12.31.

마. 열람기간 : 2022. 1. 17. ~ 2022. 2. 3.(17일간)

바. 열람장소 : 예산군 도시재생과(041-339-7702)

사.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물건)조서 : 붙임과 같음

아. 관계도서 : 생략(예산군 도시재생과에 비치)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조서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서

위 치: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석양리

번호	번지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 관계	
1	298	대	97858.3	3,534.5	예산군					

예산군 공고 제2022 - 94호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2. 제정이유

- 내수면 어업의 육성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방침과 시책에 필요한 분야별 사업 지원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안 제1조~제2조)
-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예산군에 주민등록과 주된 사업장(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두고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낚시터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

라.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예산의 확보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바. 보조사업 사후관리 및 준용에 관한 사항(안 제7조~제8조)

4. 입법예고기간 : 2022. 01. 17. ~ 2022. 02. 07.(21일간)

5. 의견제출

-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수(참조: 예산군 축산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3) 보내실 곳 :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 주소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우편번호 : 32435)

- 전화 : 041)339-7823, 팩스 : 041)339-7809

4) 제출방법 : 우편, 전화, 팩스 (팩스제출 시 사전 전화통보 요망)

5) 문의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산군 축산과 축수산유통팀

【☎(041)339-782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 례 명 :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 견	비 고
	찬 성	반 대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내수면어업법」 및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예산군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을 장려하고 수산자원의 보호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란 「내수면어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어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어업인”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의 종사자를 말한다.
5. “낚시터업”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6. “어도(魚道)”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수로 또는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예산군에 주민등록과 주된 사업장(사무소를 포함한다)을 두고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에 종사하는 어업인, 낚시터업자,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

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수 있다.

1. 수산종자방류 등 내수면 수산자원 조성 및 보호 사업
2. 내수면 생태교란어종 퇴치 지원사업
3. 어도 개수·보수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
4. 내수면어업 활성화와 기반조성을 위한 시설·장비 지원사업
5. 내수면어업인 육성 및 관련 단체 활성화사업
6. 낚시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환경오염 및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
7.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행사운영에 필요한 사업
8. 낚시객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후 낚시터 시설개선 사업
9. 그 밖에 내수면어업 발전 및 낚시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내수면어업 및 낚시터업의 발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시책에 소요되는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사업자에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회수 및 향후 지원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고 제2022-96호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17일

예 산 군 수

1. 자치법규명 :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조례

2. 제안이유

-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제2조)

나. 군수의 책무(안 제3조)

다. 조례의 적용범위(안 제4조)

라.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마.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지원(안 제6조제1호)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안 제6조제2호)

바.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7일 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산군 주민복지과 (참조 : 행복키움팀 ☎ 041-339-7447, fax : 041-339-740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공고(입법예고)기간 : 2022. 1. 17. ~ 2022. 2. 07.(21일간)

나. 예고된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다.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의견제출할 곳

- 충남 예산군 예산읍 군청로 22 예산군청 주민복지과 행복키움팀(우 32435)

-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1부.
 3. 관련법령 발췌서 1부
 4.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제정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조례안 내용	찬성여부		의견	비고
	찬	성반대		

예산군 조례 제96호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
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 사례관리 대상 가구
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
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
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게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물품 및 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관계법령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기준과 절차 등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함으로써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며, 사회보장제도가 지역 사회에서 통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급여”란 제5호의 보장기관이「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2. “수급권자”란「사회보장기본법」제9조에 따른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수급자”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지원대상자”란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장기관”이란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보장기관은 이에 필요한 안내와 상담 등의 지원을 충분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보장기관은 지원이 필요한 국민이 급여대상에서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이들이 필요로 하는 사회보장급여를 적절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장기관은 국민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충족시키고 생애주기별 필요에 맞는 사회보장급여가 공정·투명·적정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보장기관은 사회보장급여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보장 관련 민간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혜택 또는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보장기관은 국민이 사회보장급여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 정책 및 관련 제도를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⑥ 보장기관은 지역의 사회보장 수준이 균등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붙임 2】

예산군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예산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써 총1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연간 소요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으로 비용 추계서를 미첨부함.

4. 작성자 : 주민복지과장